

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
[]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
[]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7일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(전화번호:)

건축물	건축물명	위치
건축물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	변경 전 건축물 종류	[] 공공건축물 [] 학교 [] 다중이용시설 [] 기타
	변경된 건축물 종류	
	변경일	
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	석면건축자재 철거 일 · 교체일	
	철거 · 교체된 석면 건축자재	
	철거 · 교체된 석면 건축자재의 면적	
	철거 · 교체된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	

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(교육감 또는 교육장)

첨부서류	1.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. 건축물석면지도 3. 석면건축자재 철거 · 교체 증명자료(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